



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특별지침

[시행 2022. 3. 2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47호, 2022. 3. 2., 제정]

보건복지부(보건의료기술개발과), 044-202-2862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·관리규정」(이하 "운영·관리규정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·관리규정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.

제4조(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완화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·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백신 임상 시험 3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.

1. 연구개발기관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인 경우 : 20퍼센트 이상
 2. 연구개발기관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(이하 "중견기업"이라 한다)인 경우 : 30퍼센트 이상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·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이 고시가 시행된 날까지 법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과제의 당초 사업공고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④ 이 고시가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는 협약 변경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차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 감액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조(인건비 현금계상 인정) ①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- ② 이 고시가 시행된 날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- ③ 연구개발기간 중에 이 고시가 시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협약 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에 협약 변경을 신청한 날 이전에 발생한 인건비를 소급하여 계상할 수 없다.

④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협약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(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)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일의 전날까지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그 납부기한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이 고시를 시행한 날 이전에 연구개발기관이 연체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납부 연장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.

제7조(유효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 <제2022-47호,2022.3.2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및 인건비 현금계상 적용례) ① 제4조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과 제5조의 인건비 현금 계상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 다만,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개시된 시점 기준으로 제1항을 적용한 연구개발과제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다.